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 전상화(변호사)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또는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대법원 2021카기1051 위헌심판제청 기각결정)

당해 사건 (대법원 2021다289535호 사건)

위 청구인은 2022. 2. 24.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반된다.

예비적으로,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은 헌법 제29조, 제11조,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89535 판결은 헌법 제29조, 제11조, 제27조에 위반되므로 이를 파기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